

농협 신·경분리 본격 진행

- 2월 말 분리 방안 확정될 듯
- 장태평 장관 축산경제 농업경제 통합 뜻 밝혀

농협 신·경(신용/경제사업) 분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20일 농협개혁 기자간담회에서 2월말까지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경분리가 되는 시점에 축산경제의 별도 조직이 농업경제와 하나로 통합되어 교육·지도사업·경제사업·신용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가 되더라도 신용사업은 현행과 같이 농협법 체계 내에서 운용되므로 농업부문의 지원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조합들 중 신용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곳은 신경분리가 진행될 경우 경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축산경제대표 이사를 축산부문 조합



장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는 축산대표 선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축산경제를 농업경제로 통합하는 것은 농축협 통합에 따른 축산조직 축소를 다시 되풀이 하는 것이어서 축산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국내 양봉산업과 같이 기타 가축에 소속되어 있는 축산업의 경우 더욱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협회를 비롯해 각 축산단체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성명서를 내고 축산

조직 축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내용 그대로 지난 2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농협개혁은 1단계 중앙회와 조합의 지배구조 개편(2월 국회), 2단계 중앙회 신경분리추진(금년), 3단계 경제사업 구조개선 본격추진(금년 이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양봉**

농협법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과 사업부문 대표이사(축산경제 대표이사 포함),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를 추천토록 했으며 중앙회 이사수도 21~30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감사제도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상임감사 선임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부터 조합장을 비상임화하도록 했다. 이들 조합의 조합장은 대외활동을 담당하고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이사가 맡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역농협 설립구역도 시·도 단위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기존 조합에서 농협중앙회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까지 확대했다. 다만 조합 외 회원의 출자액은 전체 출자총액의 50%(중앙회는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농민신문 자료 발췌〉